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3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김재원·이해민·신장식

조 국・김준형・한정애

강경숙 · 황운하 · 조승래

정준호 · 서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가진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위원의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법률에 규정할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하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 ③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을 위촉한다.
-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

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73조(구성) ① (생 략) 제7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 · 영상물등 · 청소년 · 법률 • 교육 • 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 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 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라 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③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은 제2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 항에 따라 문화예술, 영화 및 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 비디오물과 그 광고 · 선전물. 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분야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 춘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 형 평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30 명 이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u>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u>으 로 정한다.

항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
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
平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u>⑤</u>
<u>대통령령</u>